

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
제9조제4항에 따른 여신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에 관한 규정
일부개정규정안

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4항에 따른 여신
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의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제9조제3항제2호에”를 “제9조제4항에”로 한다.

제2조 중 “제9조제3항제2호에”를 “제9조제4항에”로 한다.

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3조(연체이자율의 상한) ①시행령 제9조제4항에 따른 연체이자율은 대부이자율
에 연체가산이자율을 합산한 이자율로서 이 경우 연체가산이자율은 연 100분의
3을 말한다.

② 연체 발생 시점에 대부이자율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리를
대부이자율로 적용한다.

1. 금융회사의 자금 조달원가 및 연체 전 개인 신용도 등을 고려한 금리로서 다
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리

가. 「여신전문금융업법」에 따른 신용카드업자가 취급하는 상품 중 일시불
거래를 연체한 경우 : 거래 발생 시점의 최소기간(2개월) 유이자 할부 금리

나. 「여신전문금융업법」에 따른 신용카드업자가 취급하는 상품 중 무이자할
부 거래를 연체한 경우 : 거래 발생 시점의 동일한 할부 계약기간의 유이자 할부
금리

2. 제1호 외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 중 높은 금리

가. 「상법」 제54조에 따른 상사법정이율

나. 「한국은행법」 제86조에 따라 한국은행에서 매월 발표하는 가장 최근의 비은행 금융기관 가중평균대출금리(신규취급액 기준) 중 상호금융 가계자금대출 금리

<조문 대비표>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「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(이하 "시행령"이라 한다) <u>제9조제3항제2호</u>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소관업무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----- ----- ----- <u>제9조제4항</u>에 ----- ----- -----.</p>
<p>제2조(정의) 이 규정에서 "연체가산이자율"이라 함은 시행령 <u>제9조제3항제2호</u>에 따라 여신금융기관이 대부약정시 연율로 체결한 대부이자율과 연체이자율간의 이자율의 차이를 말한다.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 <u>제9조제4항</u>에 ----- ----- ----- -----.</p>
<p>제3조(연체이자율의 상한) 시행령 <u>제9조제3항제2호</u>에 따른 연체이자율은 대부이자율에 연체가산이자율을 합산한 이자율로서 이 경우 연체가산이자율은 <u>연 100분의 12</u>를 말한다. 다만, 이는 <u>여신금융기관이 100분의 25를 초과하여 연체이자율을 받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.</u></p>	<p>제3조(연체이자율의 상한) ①시행령 <u>제9조제4항</u>에 따른 연체이자율은 대부이자율에 연체가산이자율을 합산한 이자율로서 이 경우 연체가산이자율은 <u>연 100분의 3</u>을 말한다.</p>
<p align="center">< 신 설 ></p>	<p>② <u>연체 발생 시점에 대부이자율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리를 대부이자율로 적용한다.</u></p> <p>1. <u>금융회사의 자금 조달원가 및 연체 전 개인 신용도 등을 고려한 금</u></p>

리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
리

가. 「여신전문금융업법」에 따른
신용카드업자가 취급하는 상품
중 일시불 거래를 연체한 경우 :
거래 발생 시점의 최소기간(2개
월) 유이자 할부 금리

나. 「여신전문금융업법」에 따른
신용카드업자가 취급하는 상품
중 무이자할부 거래를 연체한
경우 : 거래 발생 시점의 동일한
할부 계약기간의 유이자 할부
금리

2. 제1호 외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
중 높은 금리

가. 「상법」 제54조에 따른 상사
법정이율

나. 「한국은행법」 제86조에 따라
한국은행에서 매월 발표하는 가
장 최근의 비은행 금융기관 가
중평균대출금리(신규취급액 기
준) 중 상호금융 가계자금대출
금리

제4조 (생 략)

제4조 (현행과 같음)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	금융위원회
소관부서	금융정책과
연락처	2100-2835